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1725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 1. C

2. F

변론 종결 2016. 11. 30.

판결 선고 2016. 12. 14.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506308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는 제1심 공동피고 A, B,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6. 1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 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 B, D, E과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1. 7.경 피고 F가 운영하는 서울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I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나. D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은 위 제안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였다. B는 E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된 서울강북구 L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D은 피고 F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고 C를 임대인, 제1심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을 임차인으로 하고, 피고 F가 중개인으로 입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I 실장은 2011. 8. 5.경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4,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8. 5. A과 위와 같이 A이 부담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4,410만 원, 보증기한 2013. 8. 5.까지로 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A이 하나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27. 하나은행에 45,452,5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0. 2. A으로부터 25,370원을 변제받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위변제한 금원중 45,427,220원(45,452,590원 - 25,37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1. 5. 20.경 원고의 보증 하에 M이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를 한 적이 있는데, M이 범행에 사용한 출금전표의 피고 C 도장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출금전표의 피고 C 도장은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 C의 계좌에서 피고 C가 사용한 카드대금, 택시비 등이 결제되는 등 피고 C가 일상생활에 위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나. 판단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M의 전세자금대출 사기는 모두 피고 C의 모인 B가 피고C를 대신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 C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자신의 모인 B에게 통장,도장 등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전세자금 대출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피고 C의 도장 및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거나 이 사건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F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N, O, D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자금대출범행에 관여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허위 전세계약서도 허위라는 점을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F가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작성되었고, 피고 F가 중개인 란에 서명날인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D은 피고 F의 친구로 H부동산을 같이 운영하여(피고 F에 대한 항소심 형사판결 제5면 참조, 갑 제3호증)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이 처리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업무를 집행한 동업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참조), ⑤ D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H부동산 운영을 위한 업무집행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D의 사용자로 D이 H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F는 D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F는 A, B,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45,42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5. 28.부터 피고F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선고일인 2016.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F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F에게 위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연경, 판사 이진영